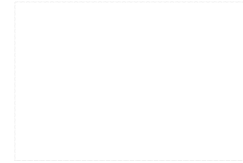


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 강좌 표준약관



표준약관 제10032호

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가 제공하는 클라이밍 강좌를 수강하는 자(이하 '수강자'라 합니다)간의 강좌 및 수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관계법령)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와 수강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, 민법,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

제3조(게시의무)

- ①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.
 1. 강사의 인적사항
 2. 교습과정(강좌)의 현황과 개요
 3. 교습과정(강좌)별 수강료
 4. 교습과정(강좌)별 강의시간
 5. 이 약관
 6. 기타 수강자에게 필요한 사항
- ②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부대비용(이하 '수 등'이라 합니다)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합니다.

제4조(수강신청 및 설명·교부)

- ① 수강자는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수강신청서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고 수강료를 선 납부 하셔야 합니다.
- ②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이 약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설명하고, 수강료 이외에 시설이용·장비 렌탈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고지합니다.

- ③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받을 때에는 수강자에게 영수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강증을 교부하며, 수강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 약관도 교부합니다.
1. 교습과정(강좌)
 2. 강의시간
 3. 기타 계약의 중요 사항

제5조(수강료등)

- ①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료 등을 청구합니다. 다만, 분할지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할 때 1회 분할 수강료 등을 청구하고, 제2회 이후의 분할 수강료 등은 약정한 일자에 청구합니다.
- ② 수강자는 수강료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(수강증, 멤버십 카드)

- ① 수강자는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멤버십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② 수강자가 멤버십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,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허위신고,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합니다.
- ③ 수강자는 멤버십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 회원 강제탈퇴를 명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(강의시간 및 강사)

- ①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교습과정(강좌), 강의시간, 강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합니다.
- ②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예정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수강생에게 고지합니다.
- ③ 수강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강의시간에 또는 변경된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강의 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(휴강)

- ①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휴강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1. 국경일 및 공휴일
 2. 정기휴일: 매주 금요일 오전타임. 야간 정상 개장(18:00~23:00).
- ②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제1항이 규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휴강을 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며, 이 경우 제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
제9조(수강의 연기)

- ① 수강자는 수강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수강자가 수강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증명서를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③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제2항의 연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번 교습과정(과목)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의 연기를 허락합니다.
- ④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수강의 연기를 허락한 경우에는 수강증에 강의 시간 등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수강자에게 재교부합니다.

제10조(수강신청의 철회)

- ① 수강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② 수강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(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)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1. 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,
 2. 수강료등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며(다만,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해야 함),
 3. 수강료등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
- ③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,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
1.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(이하 '기납부[既納付] 수강료'라 합니다)의 전액
 2. 수강자가 강좌이외 실습에 필요한 장비 렌탈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금 환불. 다만,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렌탈 장비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.
- ④ 수강자가 강좌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,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- 시설이용 미포함

$$\frac{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- \text{환불수수료}13\% - 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\times \text{철회시까지의 강좌시간수}}{\text{전체 강좌시간수}}$$

- 시설이용 포함

$$\frac{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- \text{환불수수료}13\% - 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\times \text{철회시까지의 이용일수}}{30\text{일}}$$

제11조(계약의 중도해지)

- ① 수강자가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에 대한 행정처분(인가.등록의 취소, 일정 기간의 교습정지 등),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의 이전, 폐강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,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의 강의시간 또는 강사의 변경으로 인해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,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
$$\frac{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- 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\times \frac{\text{당해 사유 발생시 또는 해지시까지의 교습시간수}}{\text{전체 교습시간수}}}{\text{전체 교습시간수}}$$

- ② 수강자가 질병, 주거지의 이전,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,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
- 시설이용 미포함

철회시까지의 강좌시간수
$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- \text{환불수수료}13\% - 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\times \frac{\text{철회시까지의 강좌시간수}}{\text{전체 강좌시간수}}$

- 시설이용 포함

철회시까지의 이용일수
$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- \text{환불수수료}13\% - 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\times \frac{\text{철회시까지의 이용일수}}{30\text{일}}$

제12조(계약의 해제)

- ① 수강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1.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
 2. 정원을 초과한 수강자의 교습
 3. 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
 4. 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교습
- ② 수강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(제4호의 사유 제외)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,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1.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(당해사유를 안후 지체 없이 해제한 경우) 또는 다음의 금액(당해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)

$$\frac{\text{해제시까지의 교습시간(일)수}}{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- 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\times \frac{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}{\text{전체 교습시간(일)수}}}$$

2.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
 :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추가로 다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

$$\frac{\text{해제시까지의 교습시간(일)수}}{\text{정당한 수강료의 전액} \times \frac{\text{정당한 수강료의 전액}}{\text{전체 교습시간(일)수}}}$$

제13조(퇴원)

- ① 다음 각호의 수강자에 대하여 퇴습을 명할 수 있습니다.
1.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
 2.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
 3. 수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
- ② 디스커버리 클라이밍 스퀘어는 퇴원을 명할 경우 그 수강자로부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.

$$\frac{\text{퇴원시까지의 교습시간(일)수}}{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- 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 \times \frac{\text{기납부 수강료의 전액}}{\text{전체 교습시간(일)수}}}$$

제14조(손해배상)

- ① 수강자가 제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1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- ② 수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의 시설이나 교습기자재를 멸실·훼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15조(천재지변등)

-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강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②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, 수강자는 보강 실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③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보강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강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④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수강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환급하며, 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는 교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때 지체 없이 다음의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.

<p style="margin: 0;">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까지의 교습시간수</p> <p style="margin: 0;">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-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× -----</p> <p style="margin: 0; text-align: right;">전체 교습시간수</p>
--

제16조(관할법원) **디스커버리 클라임 스퀘어와** 수강자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.